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봉양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인제,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철성,
서상열,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한·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사업추진 세부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숲길을 훼손하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다.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12조의2)

라.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마.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숲길관리청”이란 숲길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 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 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 지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자연

휴양림의 명칭·위치·면적, 시설물의 종류·규모가 포함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중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숲길 운영관리)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

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17조(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위임(제17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		구청장,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및 지정 신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2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나.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같은법 제14조	
다. 자연휴양림 조성(시설 설치) 및 관리	◦ 같은법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5	

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7조 ~ 제9조 (생략)

제10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1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생략)

〈신설〉

제11조 (생략)

〈신설〉

제12조、제13조 (생략)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의2(숲길 운영관리)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의2(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제14조 ~ 제15조 (생 략)

〈신 설〉

제16조 (생 략)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7조(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제2항 및 제12조의2(숲길 운영관리)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정원도시국 공원여가사업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산림문화·휴양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서울형 치유의 숲길 확대 운영	536,995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숲
- 사업기간 : 2025.1. ~ 12.
- 사업대상 : 총 17개소(13개 자치구 및 서울대공원)
- 사업내용 :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자연 체험과 접목된 명상, 요가 등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주병준

추계세계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